

2017년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17년 7월 5일

제주특별자치도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

근무부서	임용분야	임용등급	임용인원
노인장애인복지과	양지공원 화장로 운영	시간선택제임기제 “라” 급 (주35시간)	1명

2. 임용분야 및 주요 업무

임용분야	주요 업무
양지공원 화장로 운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시신(유골) 운구 및 화장로 운영 ○ 화장 유골의 수골 및 분골 ○ 유족안내·제례실 관리 ○ 화장로 및 환경오염방지설비 유지관리 등

3. 임용(계약)기간

○ 임용일로부터 2년

※ 근무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실적 평가 등을 거쳐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고절차 없이 연장이 가능하고, **사업이 종료될 경우 근무기간을 연장하지 않을 수 있음**

4. 응시자격 요건

가. 자격요건

임용분야	임용직급	자 격 요 건
화장로 관리	시간선택제 임기제 “라”급 (주35시간근무)	※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.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2.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
		▶ 관련학위 해당학과 : 장사관련학과

※ 위 임용분야 관련학과의 명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, 서류의 내용에 「우리 대학(원)의 ○○학과는 공고문에 게재된 ○○학과와 동일계통의 학과임을 증명함」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

나. 공통요건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 - ※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.6.30.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(2013.7.1. 민법 개정)
- 지방공무원법 제66조(정년)에 해당되지 않은 자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-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에 해당되지 않은 자

▶ **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**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 - ※ 개정된 「민법」 시행(2013.7.1.)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.6.30.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 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6의3.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▶ **지방공무원법 제66조(정년)**

-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.
- ② 제①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,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.

▶ **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**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호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 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 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○ 지역 및 성별 : 제한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
5. 시험 방법

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,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
-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선발할 수 있음

※ 서류전형 기준 : 업무연관성, 경력, 전공, 기타 업무능력 평가(세부내용 비공개)

나.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
-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 - ※ 5대 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·논리성, 예의·품행·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·발전가능성
-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.

6. 보수수준

○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

구 분	근무기간	보수(연봉액)		비 고
		상한액	하한액	
시간선택제 임기제*라'급 (8급 상당)	2년	43,950천원	31,350천원	* 연봉 하한액 책정 원칙(임용 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 최종결정)

※ 연봉외 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

※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평가 등을 거쳐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

※ 고용보험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 가입희망시 가입가능 (단,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7. 응시원서 접수

가. 응시원서 접수

- ① 접수기간 : **2017. 7. 17.(월) ~ 7. 19.(월)(3일간)**
 - ※ 접수기간 : 근무시간 내(09:00~12:00, 13:00~18:00) 접수 가능
- ② 접수장소 :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 인사담당(제1청사 1층 102호사무실)
 - ※ 위치 :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(연동)
- ③ 접수방법 :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우송
(631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, 제주특별자치도청 총무과)

※ **등기로 우송하는 경우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 18: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**하며
응시료 수령을 위한 「반신용 소봉투」에는 반드시 ① **등기용 우표 부착**, ② **수신인 주소성명 기재**, ③ **응시수수료 금액(우체국 「통상환증서(소액환)」 구입·동봉**)

- ④ 기타 시험일정
 -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행계획 공고 : **‘17. 7. 24.(예정)**

8. 제출서류

가. 공통사항(필수 제출)

- ① 응시원서 1부 <별지 제1호 서식>
 - ▶ 응시수수료 : **5,000원**
 - 제주특별자치도수입증지 첨부. (도청 민원실 민원접수창구 전자인증기 사용)
 - ※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(금융기관 판매)는 불인정
 - ※ 등기우편 접수로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상당금액을 우체국 통상환증서(소액환)로 교환 동봉해야 합니다
- ② 이력서 <별지 제2호 서식>1부
 - ▶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**증빙자료 반드시 첨부(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)**
- ③ 자기소개서 <별지 제3호 서식>
 - ※ 자유롭게 기술하되, 성장과정, 가족사항, 학교생활 및 전공분야, 지원동기, 장래 업무구상 등 기재
- ④ 직무수행계획서 <별지 제4호 서식>

- ⑤ 주민등록초본 1부(남자의 경우는 병역사항 기재 포함)
- ⑥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. <별지 제5호 서식>
 - ※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여 함께 제출(※ **최종합격시는 대사관 및 아포스티유 공증을 거쳐 제출하여야 함**)

나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- ①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(졸업증명서) 사본 1부
 - ▶ 학과(학위) 명칭이 공고문과 상이한 경우 관련학과(학위) 증명서 제출<별지 제6호 서식>
- ② 자격증 사본(장래지도사) 1부.
- ③ 당해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 각 1부
 - ▶ 발행기관(단체)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
 - ▶ 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,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서류전형일 기준
 - ▶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
- ④ 국민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(원본)1부.
 - ▶ 국민건강보험공단(www.nhic.or.kr)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
 - ▶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“보험가입 전제기간” 발급
- ⑤ 학위(석사·박사)논문 요약서 1매 이내 (논문 표지 사본 첨부)
- ⑥ 동일계통 학위(학과) 증명서 1부 <별지 제6호 서식>
 - ▶ 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(학과) 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

다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
-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(단, 어학능력은 2년 이내)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위, 경력증명서, 논문 등)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하고 공증을 거쳐야 함

9. 기 타 사 항

-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+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에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(<http://www.jeju.go.kr>)에 별도 공고 합니다.
-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(<http://www.jeju.go.kr>)의 시험 정보란에 게시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임용절차 관련 문의 : 총무과 인사부서 (☎ 064-710-6212, 6218)
 - 직무내용 관련 문의 : 양지공원(064-710-6621)